농림축산식품부 제 2026 - 560호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보급·확산을 위해 2027년 도축장(포유류·가금류), 집유장 분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 사업 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집유업 영업자

2. 사업 내용

○ 우리부에서 구축 중인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한 작업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 사업대상 도축장(포유류·가금류), 집유장의 중요관리점(CCP) 및 선행요건 관리 데이터가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동 수집, 전산자동기록, 모니터링되도록 통신환경 및 스마트센서 구축 등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도축장·집유장 영업자는 자체적으로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 구축업체(공급기업)를 선정

※ 현장 구축업체(공급기업) 선정 참고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해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중 적격업체 선정

○ 현장구축 및 생산단계 스마트 HACCP 시스템 연계 요건

- 중요관리점(CCP) 관련 센서와 컨트롤러 활용 가능 시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하여 연동하며, 기존 센서가 미설치 된 경우 신규로 설치하여 시스템과 연동하는 형태로 구축
- 작업장 데이터 센싱을 위한 통신환경이 구축(무선/유선 선택 적용)되어야 하며, 작업장의 HACCP 관련 데이터는 인터넷 회선을 통해 스마트 HACCP 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함(1년이상 의무 적용)
- 수집서버 및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며 이탈 발생 시 모니터링 장비에서 알람을 제공
- 수집된 데이터는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통해 스마트 HACCP 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
- 네트워크 및 센서전문업체가 시공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하자발생 등에 대한 관리 책임 관계를 명확히 구체화
- 부대장치 및 기기(설비)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

※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사업('24.~'26.)
- 개발내용 : ①도축장(포유류·가금류)·집유장의 중요관리점 및 선행요건관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 모니터링, 이탈 알림, 개선조치가 가능한 표준모듈시스템, ②IoT 기반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한 현장 데이터 자동 수집 및 전산기록 시스템, ③모바일앱 개발, ④기존 개발 시스템 고도화 등
- 추진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집유장 분야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완료('24년), 포유류 도축장 개발 완료('25.), 가금류 도축장(도계장) 개발('26. 완료 예정)

3. 사업비

○ 총 3억 원(국비 120 백만 원 / 축산발전기금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27년 사업량 총 3개소, 업체당 총 1억 원(국비 40백만원) 지원

4.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 수집서버 구축(서버, 모니터 등)

○ 수집센서 구축(저유조온도, 수유검사, CIP, 예냉실온도, 수질관리센서, 기자재 설치 등)

○ 현황 모니터링 스크린

○ 전산입력 단말기(테블릿 PC 등)

○ 네트워크 장비(공유기/스위치, AP 등)

○ 설비 연동 및 구축 인건비

5. 추진 방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도축장·집유장 영업자는 자체적으로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 구축업체(공급기업)를 선정

○ 시스템 유지관리 상태 등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6. 추진 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26. 10. 30.)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접수('26. 10. 30. ~ 11. 20.) : 지자체

- 사업을 희망하는 도축장·집유장 영업자는 관할 시·군청에 '26. 11. 20.(금) 18시까지 사업신청서(별지) 제출

③ 적격 여부 검토('26. 11. 23일 주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사업신청서, 요건확인서 등 제출서류 검토

④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알림('26. 11. 30일 주간) : 농림축산식품부

⑤ 사업 설명회('26. 9~10월)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지자체 담당자, 도축·집유업 영업자 대상 시스템 시연 등(9.29. 집유장, 9.30. 도계장)

7. 기타 사항

○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이경주 주무관(044-201-2976), 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IT 전략팀 김나미 심사원(043-928-0079)에 문의

8. 참고 사항

○ <별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참고> 시·도 담당부서 연락처

붙임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단계(도축장, 집유장) 축산물 스마트 HACCP 시스템*의 단계적 개발 및 보급·확산을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운영 내실화 도모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 스마트 HACCP 시스템 보급을 통한 기존 수기 기록·관리 운영 방식에서 표준화된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여 디지털 기반 상시관리 체계 운영

2. 사업시행기관 : 각 지자체의 장

3. 사업기간 : 2027년 12월 말까지

4. 사업대상 : 도축장(포유류·가금류), 집유장 영업자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집유업 영업장에 한함

<사업신청 제한>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 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 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사업비 : 300백만원(사업량: 3개소/축산발전기금/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업체당 사업비 100백만원(국비 40백만원, 지방비 3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6. 사업 내용

○ 우리부에서 구축 중인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한 작업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사업('24.~'26.)**

- 개발내용 : ①도축장(포유류·가금류)·집유장의 중요관리점 및 선행요건관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 모니터링, 이탈 알림, 개선조치가 가능한 표준모듈시스템, ②IoT 기반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한 현장 데이터 자동 수집 및 전산기록 시스템, ③모바일앱 개발, ④기존 개발 시스템 고도화 등
- 추진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집유장 분야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완료('24년), 포유류 분야 도축장 개발 완료('25.), 가금류 분야 도축장(도계장) 개발('26.)

7. 추진 방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도축장·집유장 영업자는 자체적으로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 구축업체(공급기업)를 선정

○ 시스템 유지관리 상태 등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8. 추진 체계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업대상자
사업자 선정 공모,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지자체) 지방비확보, 공모신청, 보조금교부신청, 사업관리·정산 (인증원)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Ⅱ. 세부추진내용

1. 시스템 구성도



* 주요 디지털 전환 범위 : 도축장, 집유장 수기일지 표준화 개발(약 36종), 전 공정에 대한 HACCP 데이터 및 공정 품질 데이터 수집

2. 사업 주요 내용

○ 우리부에서 추진 중인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하여 현장 맞춤형 스마트 HACCP 도입

- 사업대상 작업장의 중요관리점(CCP) 및 선행요건 관리 데이터가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동 수집, 전산자동기록, 모니터링되도록 통신환경 및 스마트센서 구축 등

○ 현장구축 및 생산단계 스마트 HACCP 시스템 연계 요건

- 중요관리점(CCP) 관련 센서와 컨트롤러 활용 가능 시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하여 연동하며, 기존 센서가 미설치 된 경우 신규로 설치하여 시스템과 연동하는 형태로 구축
- 작업장 데이터 센싱을 위한 통신환경이 구축(무선/유선 선택 적용)되어야 하며 집유장의 HACCP 관련 데이터는 인터넷 회선을 통해 스마트 HACCP 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함**(1년이상 의무 적용)**
- 수집서버 및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며 이탈 발생 시 모니터링 장비에서 알람을 제공
- 수집된 데이터는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통해 스마트 HACCP 프로그램으로 전송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
- 네트워크 및 센서전문업체가 시공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하자발생 등에 대한 관리 책임 관계를 명확히 구체화
- 부대장치 및 기기(설비)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

3.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 수집서버 구축(서버, 모니터 등)

○ 수집센서 구축(저유조온도, 수유검사, CIP, 예냉실온도, 수질관리센서, 기자재 설치 등)

○ 현황 모니터링 스크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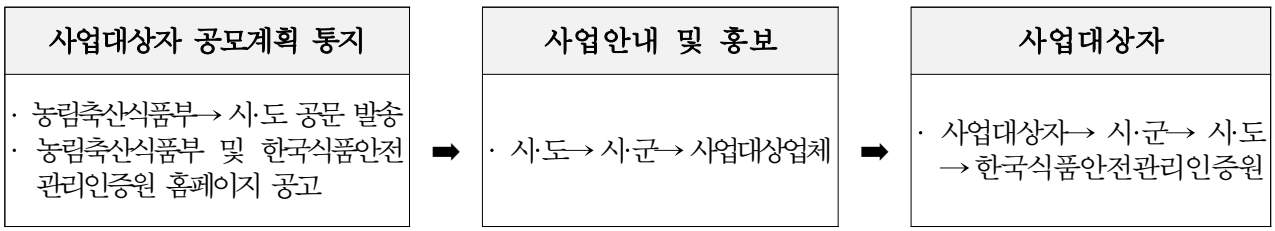
○ 전산입력 단말기(테블릿 PC 등)

○ 네트워크 장비(공유기/스위치, AP 등)

○ 설비 연동 및 구축 인건비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계획 공고('26. 10.30.~11.20.)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 발송

지자체(시·도 및 시·군)

○ 각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 및 지침 공고

○ 각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선정 후 해당 시·도에 제출

* 지방비 편성 및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각 시·도에서는 서류 검토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공문 제출('26. 11.20.)

* 지자체 담당자는 사업대상자의 적격 기준을 검증하여 요건확인서(별지2 참고)를 작성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서류(별지1)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에 공모 신청('26.11월)

2. 사업자 선정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사업 추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 시·군→ 사업대상자	➡	· 현장 구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사업자 적격 여부 검토('26. 11.23.~11.27.)

- 사업신청서, 요건확인서 등 제출서류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26. 11.30일 주간)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교부신청		사업비 집행 및 추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 지자체,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 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자금집행 및 사업비 정산 확인

○ 시·도는 사업비 결산내역 및 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익년도 3월 말까지)

사업대상자

○ 사업 종료 후 해당 시·군에 결과보고서 및 증빙 서류 제출

4.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집행점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중요재산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	· 민간보조사업자 ➡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	·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농림축산식품부

○ 필요할 경우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사업추진 실적 점검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자체장은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e나라도움에 등록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정보등록 사항 보완·확인 및 공시 처리 등 관리**

○ 시·군은 보조금 이월 시 e나라도움에 해당연도 말까지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사업대상자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 안됨

-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e나라도움에 등록·보고**

* e나라도움: 사업수행관리 》중요재산관리 》대장관리 》중요재산대장관리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2. 환류

○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도입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익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Ⅴ. 관련서식

< 별지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별지2 > 지자체 요건확인서

< 별지2 > 사업 적격자 여부 검토 결과서

< 참고 > 시·도 담당부서 연락처

별지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 사업 신청서

신청분야	□ 집유장 □ 도축장(포유류) □ 도축장(가금류)

[업체현황]

업소명		영업허가번호 (허가 연원일)	
대표자명		대표번호	
영업장 소재지			

[HACCP 운영현황]

관리책임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관리책임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중요관리점 운영 현황(자유 기재)				

위와 같이 2027년 도축장, 집유장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 구축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7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선행요건프로그램 1부 ③ HACCP기준서 1부 ④ 사업계획서 1부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 사업 계획서

업체 현황	
HACCP 운영 현황	
스마트 HACCP 필요성	
기대효과	

※ 필요시 항목 추가 등 양식 변경 가능

별지2 **지자체 요건확인서(시·도, 시·군 작성)**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 사업 요건확인서

□ 지자체명	

□ 신청현황

업체명	
대표자명	
영업허가번호 (허가 연원일)	

□ 신청자격 확인내역

신청요건 확인사항	적정여부	비고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확인 결과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결과		
· 지방비, 자부담 등 예산확보 가능 검토 결과		
· 보조금법,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지침 등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지원 제한 확인 결과		

※ 부적정이 1개라도 있는 경우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신청 불가

2026. . .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3 **사업자 적격여부 검토 결과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작성)**

생산단계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자 적격여부 검토 결과

❑ 신청업체 현황

○ 업체명 :

○ 소재지 :

○ 업　종 :

○ 중요관리점 :

❑ 적격여부 검토 결과

구 분	검토대상	검토결과	비 고
자격요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집유업 영업장에 한함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선행요건프로그램, HACCP 기준서 1부		
	사업계획서 내용 구체성 및 적정성		
지자체 검토	지자체 요건 확인서 1부		

2027년 도축장, 집유장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 구축 신청업체의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6 .　.　.

검토자 : 스마트기획팀　심사관　　(서명)

확인자 : 스마트기획팀　팀　장　　(서명)

참고 **시·도 담당부서 연락처**

기 관 명	부 서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051-888-4994
대구광역시청	농산유통과	053-803-6535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	032-440-44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	061-286-6591
대전광역시청	농생명정책과	042-270-3842
울산광역시청	농축산과	052-229-2932
세종특별자치시청	동물정책과	044-300-7612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94
강원특별자치도청	동물방역과	033-249-3405
충청북도청	동물방역과	043-220-3592
충청남도청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8
전북특별자치도청	동물방역과	063-280-2655
경상북도청	동물방역과	054-880-3455
경상남도청	동물방역과	055-211-6583
제주특별자치도청	동물방역과	064-710-2142